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

제정 2012년 6월 22일 조례 제1228호 일부개정 2024년 5월 17일 조례 제2168호 (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각종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오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24. 5. 17〉

- 1. "공사"란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,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,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,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,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.
- 2. "공사감독"이란 「건설기술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 제10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·점검·지도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공사감독공무원"이란 공사 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.
- 4. "부실공사"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 대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건축물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

제4조(주민설명회 개최) 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주민의 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,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,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제5조(공사시행통보)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 개요 및 설계도서,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공사시행통보는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한다.
- 제6조(공사감독)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·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- 제7조(합동준공검사 실시) ① 시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합동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준공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합동준공검사 대상 및 공종과 검사 시기, 지적사항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의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, 특히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건축물 (신축, 증축, 개축, 리모델링)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)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·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계약심의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.
- 제9조(부실시공 신고·접수) ①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(이하 "신고자"라 한다)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

(추 1)

접수하거나 우편, 모사전송(팩스),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.

- ③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,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부실시공 신고 처리 및 제재)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이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,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 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) 시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공사감독공 무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- 제12조(수당 등)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회의참석, 출장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기술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4. 5. 17 조례 제2168호,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